

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5일
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상 호	연락처	
	소재지		
	대표자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	
검사방법	[]방사선(RT)	[]초음파(UT)	[]침투(PT)
	[]자기(MT)	[]와전류(ECT)	[]누설(LT)
	[]그 밖의 종목()		

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비파괴검사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1부 2.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의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등록하고자 하는 검사방법 및 장비현황 1부 4. 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증(방사선 비파괴검사만 해당합니다) 사본 1부 6. 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 각 호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각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※ 작성방법

"검사방법"은 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방법 중에서 신청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.

※ 유의사항

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비파괴검사업을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(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제1호)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